일련번호	5	감사자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	
구로구청 (가부서)		종류	인원	조치방법	금액(천원)
		주의요구	3		

제 목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 지적내용 】

구로구청(이하 '발주자'라 한다)은 '17. 2. 8. A사(이하 '수급인'이라 한다)와 도급계약(준공 '18.11.30., 금액 4,326백만 원)을 체결하여 '구로구 ○○○○○○○○ 신축공사'(이하 '이 건 건설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였으며,

'17. 4.11. B사와 이 건 건설공사의 감리용역(완수 '18.12.13., 금액 71백만 원)을 체결하고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하였다.

한편 수급인은 '17.7.10. 이 건 건설공사 중 "토공사"(준공 '18.11.21., 금액 741백만 원)와 "철근콘크리트공사"(준공 '18.10.31., 금액 458백만 원) 에 대하여 C사, D사(이하 '하수급인'이라 한다)와 하도급 계약을 각각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제1항 및 제6항에 따르면 건설업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업자는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자(공사관리관)인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건설업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보증서를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에 따라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불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또는 대여계약금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런데 하수급인은 이 건 하도급 공사를 시행하면서 건설기계 대여업자로부터 '17. 7. ~ '18. 11. 기간 동안 건설기계 8대를 임차하고 그 대여계약 금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였음에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서를 발급 또는 이에 갈음하는 직불합의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발주자(공사관리관)는 하수급인이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하수급인과 건설기계 대여업자간 대여대금에 대한 분쟁 발생 및 그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대여대금이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하수급인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발주자(공사관리관)의 지급보증서 교부여부에 대한 미확인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 조치할 사항 】

구로구청장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미교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하수급인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시정명령 등) 제4호 또는 제82조(영업정지 등)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할 수 있도록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교부의 확인 업무를 소홀히 한 해당 공사관리관 및 진행 중인 모든 공사관계자(건설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공사관리관 등)에게 철저히 지도·교육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신분상 조치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의 확인 업무를 소홀히 한 공사관리관에게 신분상 조치